

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9. 16(금) 09:00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
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18호
- 나. 제 출 자 : 도병두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2. 제안이유

금천구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등의 운영과 개최를 통해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및 신청절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토론회 등의 지원 및 관리(안 제5조)
- 라. 토론회 등의 진행(안 제6조)
- 마. 토론회 등의 협조요청 및 결과반영(안 제7조 및 제8조)
- 바. 토론회 등의 실비보상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금천구의회와 의회 의원이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용어의 정의,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및 신청 절차, 토론회 등의 지원 및 관리, 토론회 등의 진행, 토론회 등의 협조요청 및 결과반영, 토론회 등의 실비보상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, 효율적으로 정비된 조례안으로 보여짐.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- “토론회 등”이란 안전심사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64조 “공청회”를 제외한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포럼,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규정하였고, “현안사항”이란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(안 제3조)
 - 의장은 토론회 등의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의견 수렴과, 이를 통한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 반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,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원칙을 정하였음.

○ 토론회 등의 신청절차(안 제4조)

- 위원회나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의장에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,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며, 승인 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.
- 이는 토론회 등의 개최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, 구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.

○ 토론회 등의 지원 및 관리(안 제5조)

-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, 그 연간계획의 수립,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하며, 토론회 등 회의는 회의록으로 작성·관리하는 것으로, 이는 토론회 등 관리의 기준에 적합해 보임.

○ 토론회 등의 진행(안 제6조)

-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, 의원 주관은 해당 의원이 대표가 되어 진행토록 한 것으로, 개최 주관에 따른 진행 절차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됨.

○ 토론회 등의 협조요청 및 결과반영(안 제7조~안 제8조)

-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 공무원,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, 당연 규정이라 할 것임.
-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,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

입법 활동의 지속 가능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규정이라 할 것임.

○ 토론회 등의 실비보상(안 제9조)

- 토론회 등의 발표자, 토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
- 본 조례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표자, 토론자 등의 수당과 경비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예산 편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○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회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, 입법형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